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장의 '가입자 유의사항'은 해당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요약한 것이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자의 권리

◇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보험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전 알릴 의무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이 보험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약자 권리, 의무, 보험금 지급사항 등 기타 중요내용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직업, 건강상태 등을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기본보험 또는 특약)상품의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해당 보험(기본계약 또는 특약)의 사망보험금보다 클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문의 사망보험금 관련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도평가결과 상향조정된 약관)

이 약관은 이해가능도 평가결과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동 상품설명서가 쉽게 충실히 작성되어 약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에 따라 보통이상으로 상향평가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약관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3.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3-1.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 1 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청약철회시 지정주소 안내 참조)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http://www.chartis.co.kr>)에서도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철회의 효력이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전화 :)
- 가까운 영업점 위치: (전화 :)

3-2. 계약취소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3 개월 이내(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3-3.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고지의무 위반 효과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4.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직업, 직무변경 등 통지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5.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3-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용

구분	담보명	보장내용 (지급사유)
기본 담보	상해사망, 후유장해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보통약관5조[계약의무효]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금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후유장해담보는 가입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가능
선 택 담 보	상해/질병의료비	여행중에 상해나 질병으로 <u>해외의료기관</u> 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비용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공인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발생 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약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는 면책금액을 공제후 보험금 지급 ■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 제외) 보상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상해의료비 (국내입원)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u>국내의료기관</u>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상해의료비 (국내외래)	해외여행중에 입은 상해로 <u>국내의료기관</u> 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 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상해의료비 (국내처방조제)	여행중 상해로 <u>국내의료기관</u> 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 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8천원
	질병의료비 (국내입원)	여행중 질병으로 <u>국내의료기관</u>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 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비 (국내외래)	여행중 질병으로 <u>국내의료기관</u> 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 회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의료비 (국내처방조제)	여행중 질병으로 <u>국내의료기관</u> 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 건당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8천원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 진단/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질병사망	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만료후 30일 이내 사망한 경우 및 약관에서 정한 장애상태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여행중 타인의 신체손해,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증권상 보상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초과분)
	특별비용	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년내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여행도중에 사망한 경우, 탑승한 항공기·선박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반 중 조난된 경우 등의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 14일 한도), 유해이송비용(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 운임, 수행의사, 간호사 호송비) 등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의 매일 70,000원씩 지급(단,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 한도)
카드사용액 보상(해외여행중 상해사망)	여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해 1년 이내 사망시 본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전액을 카드사용금액의 결제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여권분실위로금	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상

※ 실제로 가입한 담보 사항 및 가입금액은 증권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증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질병 의료비의 국내 외래/처방의 경우 보험가입기간(1년미만/이상)에 따라 보상하는 사항이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약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과 관련한 계약자 권리, 의무, 보험금 지급사항 등 기타 중요내용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직업, 건강상태 등은 사실대로 상세히 알려주셔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계약자 및 보험금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의 고의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양식업자,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 의료실비 담보의 경우, 아래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 선천성 뇌질환(Q00~Q04)

- 비만(E66)

- 비뇨기계 장애(N39, R32)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비(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해외 의료기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에 소요된 비용

- 아래에 열거된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phimosis)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꺼름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상기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보험약관의 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담보 보험계약 관련 사항

- 실손담보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관해 계약체결 이전에 확인하고, 다수보험 처리에 관한 설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수보험의 처리 (실손의료비 계약)

다수보험이란?
 ☞ 실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액이 있는 다수의 실손담보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 한도로 합니다.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외래), 통원의료비(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text{비례분담액}] = \frac{\text{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times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배상책임 담보 특약은 동일계약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다수 포함할 수 있어 중복가입될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중복지급되지 않고 비례보상됨으로 계약체결이전에 확장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액보험과의 차이점

- 정액보험은 ‘입원, 수술’ 등 특정 의료행위 발생시에 보장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외래’, ‘처방조제’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가 발생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비 등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 정액보험은 보험기간 동안 보험금이 고정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하지만, 실손보험은 의료비 상승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일정한도내에서 보장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의료환경 및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보험료가 상승하므로 갱신시 보험료 상승폭이 정액보험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입원의료비 보상책임액의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을 넘어 입원한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다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 보험 다수 가입시 보험금(의료비) 지급 의료비 특별약관은 같은 의료실비를 보상하는 다수의 다른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이 경우 비례보상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 보상 지급 예시

- 계약자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 중 실제손해액이 100만원인 경우

구 분	보험가입금액	보상책임액(산출보험금)	비례보상액(실지급보험금)	비례보상 합계액
A계약	10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B계약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 ※ **실제손해액** : 계약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정한 지급보험금 계산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 **보상책임액(산출보험금)** : 실제 치료비중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
- ※ **비례보상액(실지급보험금)** : 각 회사별로 비례보상을 감안하여 비례보상액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
- ※ 위 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으로, **실제 보상내용 및 지급 보험금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약관별 유의사항

상해,질병의료비	다른 의료실비 관련 보험계약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이 다른 계약의 의료실비와 분담하여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약관에서 정한 금액만큼 보상해 드립니다.
-----------------	--

※상기에서 설명 드린 사항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특별히 유의하실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것으로 각각의 담보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에 관한 유의사항

□ 회사는 아래의 특수지역 및 테러리스트와 관련한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쿠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또는 수단에서의 여행, 이들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또는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여행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
-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의 조직원과 마약밀매상,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공급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은 모든 손실, 상해, 손해 또는 법적 책임

6.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사항

6-1 해지 및 무효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보험계약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6-2. 기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 대출제도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또한 약관 대출제도가 없습니다.

7. 보험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8.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 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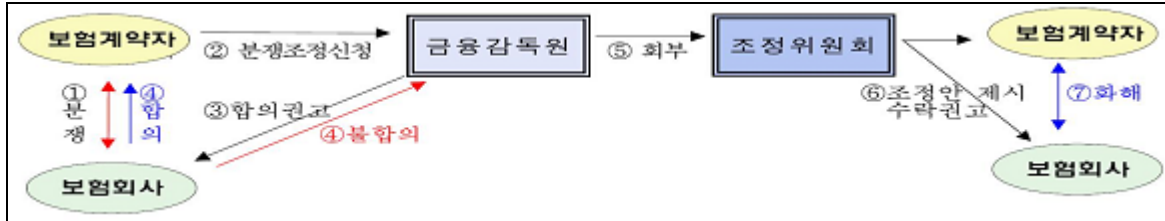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단체(정부, 지자체 등)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artis.co.kr>) 우리회사 본사 (2260-68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절차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전환**

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자의 연령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리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 부분도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약관과 함께 청약서부분을 반드시 받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청약서 상에 **피보험자 동의를 받드시 날인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는 계약자께서 청약서에 동의한 이외의 사항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9. 보험계약 체결 단계 설명사항

① **모집종사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

가. 모집자 :

나. 소 속 : 지점 _____ 대리점

다. 연락처 :

② 보험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권한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계약전 알릴사항을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설계사는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③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 **계약의 승낙절차**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10. 청약 철회시 지정 주소 안내

지점	우편번호	주 소	대표전화번호
센트럴	(110-764)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부영빌딩 9층	(02) 2260-4300
강남	(135-8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4-9 덕수 빌딩 4/6층	(02) 3440-6800
부산	(601-838)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99-9 교원아카데미 빌딩 7층	(051) 604-0200
대구	(706-728)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번지 MBC 빌딩 16층	(053) 602-0200
대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403호	(042) 605-0200
광주	(501-878)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1동 700-5 전남일보빌딩 3층	(062) 514-6331
전주	(561-711)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빌딩 15층	(063) 250-0800
경남	(641-847)	경남 창원시 팔용동 33-5 서주빌딩 4층	(055) 240-6331
울산	(680-805)	울산시 남구 달동 1325 - 12 소니빌딩 2층	(052) 270-4700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11. 보험계약개요

보험회사	아메리칸 홀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모집자	_____ 지정 _____ 보험대리점/보험모집인 _____ (전화번호 : _____)		
보험상품명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특종-상해보험)		
보험기간	201 부터 201 까지		
보험계약관계자	계약자	_____	피보험자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등은 기본계약과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동 보험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모집인에게 설명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주요 설명 내용	확인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특약별 납입기간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input type="checkbox"/>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해지환급금(무해지환급금 상품인 경우 유해지환급금간의 비교 포함), 적용이율(공시이율), 자동갱신되는 계약 조건, 유배당 등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	<input type="checkbox"/>
6	예금자보호,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절차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7	모집인 정보(성명,소속,연락처) 및 권한,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사항	<input type="checkbox"/>
8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를 보충하기 위해 별첨으로 제공된 가입설계서를 이용한 설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9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비례보상, 보장내용, 비례보상 등에 관한 설명	<input type="checkbox"/>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 은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 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1 보험모집인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 (으)로부터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내용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 보험계약자 (인)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 실손의료비 사전조회를 통하여 조회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경우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상품번호 : AHA 상품관리 제11-TA062호
2011.06.01

아메리칸 홀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아메리칸 홀 어슈어런스 캠페니는 Chartis의 계열회사입니다.

고객보관용



110-729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 15층
TEL: (02) 2260-6800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상품설명서

11. 보험계약개요

보험회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모집자	_____ 지정 _____ 보험대리점/보험모집인 _____ (전화번호 : _____)		
보험상품명	트래블가드 여행보험 (특종-상해보험)		
보험기간	201 부터 201 까지		
보험계약관계자	계약자	_____	피보험자 _____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보험료	_____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등은 기본계약과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등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 동 보험계약을 가입하시면서 모집인에게 설명받으시고 이해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란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주요 설명 내용	확인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 (특약별 납입기간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input type="checkbox"/>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갱신특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input type="checkbox"/>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해지환급금(무해지환급금 상품인 경우 유해지환급금간의 비교 포함), 적용이율(공시이율), 자동갱신되는 계약 조건, 유배당 등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	<input type="checkbox"/>
6	예금자보호,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절차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7	모집인 정보(성명,소속,연락처) 및 권한, 보험계약의 승낙절차 등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사항	<input type="checkbox"/>
8	기본계약.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를 보충하기 위해 별첨으로 제공된 가입설계서를 이용한 설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9	실손의료비보장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다수 보험계약에 대한 비례보상, 보장내용, 비례보상 등에 관한 설명	<input type="checkbox"/>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은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_____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11 보험모집인 (인)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모집인 _____(으)로부터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내용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1 보험계약자 (인)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에 관한 사항

- 이 보험계약 체결전에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네() 아니요()
- 실손의료비 사전조회를 통하여 조회한 내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경우 각 계약에서 비례분담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네() 아니요()

상품번호 : AHA 상품관리 제11-TA062호

2011.06.01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캠페니 한국지사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캠페니는 Chartis의 계열회사입니다.



회사보관용

110-729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빌딩 15층

TEL: (02) 2260-6800